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근거 규정 유효기간 삭제>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08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7.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전선로 설치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신설하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음.

그런데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부칙을 삭제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현행법 제72조의2 제1항과 제2항[1]은 배전선로 등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한전)가 그 비용의 일부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시 환경 개선 및 재난 상황 대비 등을 위해 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전이 부담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가 어려워 지중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 제3항[2] 및 제49조 제11호가 신설[3]되었음.

다만, 개정 당시 전력기금의 재원 상황과 함께 지중이설을 위한 예산 소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4]로 부칙에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하여 한시적 규정으로 신설하였음.

---

2)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3) 법률 제18280호(2021.6.15. 시행)
4)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10. (생 략)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로 하여 지자체가 부담하는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비용 일부를 전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선로 지중화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20%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음.

당초 학생들의 통학 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통행로 인근의 가공 배전선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대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22년 사업부터 도시재생·전통시장, 2023년 사업부터 노후산단 구역 내 가공 배전선로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였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약 1,250억원의 전력기금 예산을 투입하여 총 196건, 325 c-km의 가공배전선로를 지중으로 이설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전력기금으로 지자체의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을 지원하지 않게 되므로, 지자체의 비용부담 증가에 따라 다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을 폐지하여 정부가 지중화 사업을 전력기금으로 계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전선로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현재 ① 당초 목표 대비 학교 인근 통학로 등의 전선로 지중화율이 아직 현저히 낮고[5], ②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체의 경우 지중화 진행 정도가 전국 평균 대비 미진[6]하여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계속해서 지원하면 지역별 지중화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문언상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경우'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당초 학교 주변 통행로에서 도시재생·전통시장·노후산단으로 확대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58

5) 당초 사업 편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적으로 학교 주변 지중화율을 OECD 수준인 33%로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총 800c-㎞ 지중화를 시행하려 했으나 사업 대상 확장 등으로 인해 2023년까지 약 277c-㎞의 배전선로를 지중화하였음.
6)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기준, 지중화율이 전국 평균(21.3%) 보다 낮은 8개 광역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모두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43.3%) 보다 낮았음.